

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

-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방안 마련 요구 및 엄중 경고 등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다.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 관련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1년 8월부터 '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위원장)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 270일(65.2%)을 18시 이전 퇴근
- (부위원장)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18시 이전 퇴근
- (상임위원)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18시 이전 퇴근

※ 18시 이전 퇴근의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일정 등을 제외(위원장 122건, 부위원장 138건, 상임위원 39건 등)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 관련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하여 집행한 사례 및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사무총장 2건 등 총 48건 확인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

기타 회계 지적사항 및 방심위 주요업무 현황 관련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의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하였다.

또한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하고 있는데,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18년 54.4%, '22년 22.3%, '23년 12.4%) 반면,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18년 대비 오히려 증가('18년 60.2%, '22년 88.9%, '23년 87.2%)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 결과 요약 1부. 끝.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감사팀	책임자	감사팀장	유석균 (02-2110-1601)
		담당자	부감사관	최성열 (02-2110-1602)

1. 감사 개요

□ 감사배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예산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및 2023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

-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등 방심위의 주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

□ 감사범위, 기간 및 인원

- (감사범위) '18년부터 '23. 6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
- (기 간) '23. 7. 3.~7. 21.(15일), 7. 26.~8. 4.(8일), 총 23일
- (인 원) 감사팀장 등 9명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구분	계	문책	경고	주의	통보
건수	15	1	1	10	3
인원	8	1	-	7	-

※ “업추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건과 관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수시참고자료** 송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황

① 설치 목적 및 연혁

- (설치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설치 목적)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 (연혁) 2008. 5. 14. 제1기 방심위 출범, 2021. 8. 9. 제5기 출범

② 조직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 추천 3인
- 사무처
 - 2실, 4국, 1센터, 1단, 27팀, 5지역사무소 (정원: 사무총장 이하 201명)

③ 예산 및 급여 수준

- 2023년도 예산 : 총 368억 2천 4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수 입		지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계	36,824	계	36,824
1. 국가보조금(방송통신발전기금)	36,824	1.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25,4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824	2. 사업비(방송심의, 통신심의)	11,413

- 임원 및 직원 급여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원		
				일반직	계약직	전체
'23년 평균연봉	19,061	18,075	16,263	6,350	3,080	5,562

4 주요 업무현황

- 방심위의 직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음란영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 방송심의

-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중계유선방송 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 등을 유지하는지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의견제시 또는 방통위에 제재조치 요청

나. 통신심의

-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 등을 심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정요구 또는 방통위에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등 요청

다. 방송·통신 모니터

-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심의대상을 인지하기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를 실시
 - 방송 모니터요원은 지상파TV, 종편 및 상품판매방송 등을 모니터링 하며, 통신 모니터요원은 인터넷 등의 불법·유해정보 등 모니터링 수행

○ 방송 및 통신 모니터 운영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 모니터	예산	4,346	4,820	4,662	5,035	5,289	5,555
	인원	458	458	430	458	458	458
	심의상정건수	655	721	630	353	535	191
통신 모니터	예산	700	1,047	1,084	798	838	880
	인원	90	103	100	72	72	72
	심의상정건수	29,684	48,393	71,914	29,896	55,612	26,448

라. 방송·통신 민원 심의 및 처리

-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 등을 통해 처리
 - 방심위의 민원처리 기한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 경과 및 60일 경과 시 민원인에게 연장 통보
- 방송심의 민원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율이 '18년 54.4%에서 '22년 22.3%, '23년 12.4%로 감소 추세
 - 통신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18년 60.2%에서 '22년 88.9%, '23년 87.2%로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
- 방송 및 통신심의 관련 민원처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말	
방송 심의	총 접수 계	10,497(100%)	11,343(100%)	27,467(100%)	14,483(100%)	9,847(100%)	4,447(100%)	
	처리완료	60일 이내	5,709(54.4%)	4,805(42.4%)	9,294(33.9%)	1,918(13.2%)	2,203(22.3%)	550(12.4%)
		60일 경과	4,739(45.1%)	5,730(50.5%)	18,143(66%)	12,559(86.8%)	3,316(33.7%)	1,642(36.9%)
		1년 경과	48(0.5%)	795(7%)	7(0%)	4(0%)		
계	10,496(100%)	11,330(99.9%)	27,444(99.9%)	14,481(100%)	5,519(56%)	2,192(49.3%)		
민원	처리중	60일 이내					1,026(23.1%)	
		60일 경과				4,321(43.9%)	1,229(27.6%)	
		1년 경과	1(0%)	13(0.1%)	23(0.1%)	2(0%)	7(0.1%)	
	계	1(0%)	13(0.1%)	23(0.1%)	2(0%)	4,328(44%)	2,255(50.7%)	
통신 심의	총 접수 계	190,090(100%)	148,483(100%)	311,889(100%)	286,250(100%)	191,432(100%)	105,092(100%)	
	처리완료	60일 이내	114,518(60.2%)	105,626(71.1%)	267,422(85.7%)	147,214(51.4%)	170,235(88.9%)	91,622(87.2%)
		60일 경과	74,747(39.3%)	42,529(28.6%)	43,558(14%)	138,724(48.5%)	20,782(10.9%)	1,647(1.5%)
		1년 경과	485(0.3%)	297(0.2%)	866(0.3%)	280(0.1%)	15(0%)	
계	189,750(99.8%)	148,452(100%)	311,846(100%)	286,218(100%)	191,032(99.8%)	93,269(88.7%)		
민원	처리중	60일 이내					11,665(11.1%)	
		60일 경과				384(0.2%)	158(0.2%)	
		1년 경과	340(0.2%)	31(0%)	43(0%)	32(0%)	16(0%)	
계	340(0.2%)	31(0%)	43(0%)	32(0%)	400(0.2%)	11,823(11.3%)		

3.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1 위원장 등 상임위원 및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가.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복무관리 방안 미비

- 방심위의 상임위원은 「방통위법」 제18조 등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3인으로 구성
- 방심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공적정책 결정·집행 및 정부와의 수시협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공공성 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필요
- 그런데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기준(방심위 규칙)을 정하면서도,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 미마련*
- * 기재부는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상임임원도 직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범을 마련하도록 조치
- 現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의 '21. 8월~'23. 5월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9시 이후에 출근(자택→사무실)과 18시 이전에 퇴근(사무실→자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

•(위원장) 근무일수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
•(부위원장) 근무일수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67일(65%)을 18시 이전에 퇴근
•(상임위원) 근무일수 총 396일 중 288일(72.7%)을 18시 이전에 퇴근

※ 18시 이전 퇴근의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일정 등을 제외(위원장 122건, 부위원장 138건, 상임위원 39건 등)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

나. 유연근무제 직원의 복무관리 부적정

- 방심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23. 4. 3.부터 유연근무제 직원은 예외 없이 출퇴근기록을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 그런데 '23. 4. 3.이후 유연근무제 직원 92명의 출퇴근기록을 점검한 결과, 35명이 총 66차례에 걸쳐 출퇴근 기록을 미입력(출퇴근 중 1회만 입력)

• 전문위원 ○○○의 경우 '23. 4. 5. 07: 25분 경 출근기록만 있고 해당일 퇴근 기록이 없는 등 8회에 걸쳐 출근 시간에만 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

조치 방향

- ①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② 유연근무제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 (문책·경고·주의)

- 방심위는 매월 위원장에게 240만 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 원, 사무총장에게 1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

가.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사용

-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21. 8월~'22. 1월 위원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만여 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제한 기준이나 1인당 집행단가 기준 상한액을 위반하는 경우, 적립된 선수금으로 분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은폐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인 '21. 8. 31. 위원장 등 7인이 점심식사를 하자, 선수금으로 69,000원(3명) 및 64,000원(4명)으로 분할 결제
- (1인당 기준단가 초과) '21. 11. 24. 위원장 등 4인이 총 158,000원의 식사를 하여 1인당 집행단가 기준(3만 원)을 초과하자, 업무추진비 카드로 116,000원만 결제하여 집행단가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식사비용을 낮추고, 차액 42,000원을 선수금에서 차감

나. 1인당 기준단가 위반 및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21. 8월~'23. 6월 총 48회*에 걸쳐 집행단가 기준상한액(1인당 3만 원)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 위원장 13회, 부위원장 9회, 상임위원 24회, 사무총장 2회 등 총 48회

- 실제보다 참석인원을 많게 기재하여 1인당 집행단가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

- (위원장) '23. 2. 15. 4명이 148,000원의 점심식사(1인당 37,000원)를 하고,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명이 식사(1인당 29,600원)를 한 것으로 지출 결의
- (부위원장) '23. 4. 27. 4명이 150,000원의 점심식사(1인당 37,500원)를 하고, ○○팀장 등 5명이 식사(1인당 30,000원)를 한 것으로 지출 결의

- 이 과정에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비서에게 사실과 다른 참석인원을 알려주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하였고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은 자신들이 비서에게 참석인원을 알려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비서들은 위 4명이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상호 진술이 배치

다. 점심시간 과도한 음주 및 근무시간 미준수

-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 및 「취업세칙」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공식행사를 제외하고 주류 구매를 지양하고

- 직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내부직원 등과의 점심식사에서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하여 음주한 사례 확인

- '22. 5. 4. 내부직원 3명과 소주 7병, 맥주 2병 등 음주, 13:55에 100,000원 결제
- '22. 1. 12. 내부직원 3명과 소주 5병, 막걸리 1병 등 음주, 14:03에 100,000원 결제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총 60회*에 걸쳐 내부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점심식사 시간을 과도하게 초과(13시 30분 이후 결제)하여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례 확인

* 위원장 4회, 부위원장 33회, 사무총장 23회 등 총 60회

- (위원장) '22. 12. 1. ○○팀장 등 4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13:41에 식대를 결제
- (부위원장) '22. 3. 31. ○○국장 등 3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14:09에 식대를 결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①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추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조치 방향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데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

③ 업무추진비 결제금액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위원장 등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제한인원을 위반하거나 1인당 집행단가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선수금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한 전 부속실장을 **문책요구**

※ 전 부속실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23. 8. 9.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

3 지각·조퇴·외출 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통보)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지각·조퇴·외출 등은 연차휴가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그런데 방심위는 취업세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연차휴가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 업무지원시스템에도 지각·조퇴·외출 신청·결재 기능을 구축하지 않아 직원의 지각·조퇴·외출 시간이 확인 불가, 연차휴가 등에서도 미공제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① 취업세칙 등에 지각 등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지각·조퇴·외출을 업무지원 시스템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의요구

4 대외직무활동비 및 안건검토비 등 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이 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수용비*로 사례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 * 소모품구입 및 회의참석수당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210-01목)
- 그런데 방심위는 비상임위원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240만 원의 대외직무활동비를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정액 지급하여 '18~'22년 총 7억 4천만여 원을 지급하였고
 - 방송자문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면서 검토보고서 등 용역제공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위원장 50만 원, 위원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여 '18~'22년 총 7억 8천만여 원을 지급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별도의 용역제공 여부에 따라 비상임 위원 및 특별위원에게 대외직무활동비 및 안건검토비 등을 지급하도록 주의요구

5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통위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방심위는 '18~'19년 별도의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 직원 3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 ※ 방심위는 현재까지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년 이후 명예퇴직 직원이 없음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적립한 퇴직 급여충당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6 유급휴일·휴가 운영 및 기념품비 등 집행 부적정 (주의)

- 방심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닌 창립기념일·방송의 날을 유급휴일로 운영, '18~'22년 총 2억 8천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청원휴가를 과다 인정하거나, 안식휴가를 실시하여 '18~'22년 총 1억 8천만여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
- 또한, 인건비 성격을 갖는 현금성 물품으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현금성 물품인 선불형 기프트 카드(10만 원)를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18~'22년 총 2억 3천만여 원)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기준과 달리 유급휴일 등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금성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7 사업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와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가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되고
 -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행사 경비로, 관서업무추진비는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심의 활동 및 통신심의 활동 사업추진비 예산의 내역사업으로 업무수행경비를 편성하고
 - 방송·통신심의 활동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어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직원 간담회(식사) 등에 '18년~'22년 총 6,100만여 원을 집행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사업추진비 예산을 관서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8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주의·통보)

- 방심위는 '23년 특근매식비로 총 4,854만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
 - 그런데 방심위는 초과근무 건별로 특근매식비를 각각 집행·증빙하도록 하지 않고, 부서별로 주변음식점들에 식사 구매장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 직원들이 임의로 식사 등을 하고 장부에 기입하면 일정 금액을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
 - 그 결과, '23. 3. 1.~5. 31. 29개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월별 189~209명)이 총 605회에 걸쳐 3,081,300원을 집행
- * 요건: 근무개시 전, 종료 후,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등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① 집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집행한 특근매식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9 지역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부적정 (주의)

- 방심위는 「지역사무소 관사임차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임차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
 - 그런데 방심위는 '18~'20년 이미 임차계약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 직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지원 한도액이 상향됐다는 사유로 상향분 총 3,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모두 개인용으로 사용*
- * 개인용으로 사용된 임차보증금은 임차계약 종료 후 전액 회수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차보증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요구

10 조사연구과제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방심위는 '18~'22년 2천만 원 초과 조사연구과제 16건(총 4.4억여 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용역 수행자를 선정
- 그 결과, 유효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22년의 경우 총 7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경쟁입찰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

조치 방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조사연구과제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